국립목포해양대학교 공대생활관 관생 수칙

제정 2004.03.22. 개정 2013.03.00.
개정 2016.05.09. 개정 2020.01.29.
개정 2022.11.01. 개정 2023.05.08.
타규정개정 2024.03.04.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공대생활관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제2조 삭제<2020.1.29.>
제3조(호실배정) 호관 및 호실은 공대생활관장이 배정하며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 3. 4.>
제4조 (출입제한) ① 관생은 공대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대동하고 생활관 내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24. 3. 4.>
② 관생은 공대생활관장의 허가없이 거주 생활관 외 다른 생활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3. 4.>
제5조 (일과시간) ① 관생은 공대생활관 출입시간(06:00 ~ 24:00)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대생활관장은 필요시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 08:20 ~ 09:20 <개정 2024. 3. 4.>
③ 점심식사 : 11:30 ~ 13:30(주말12:00 ~ 13:00)
④ 저녁식사 : 17:30 ~ 18:30
⑤ 방학 중 식사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식사절차) ① 관생은 호실 안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 3. 4.>
② 관생은 학생식당 안에서만 식사를 하여야 하며, 학생식당 입장 시 관계 교직원에게 관생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식사는 생활관장의 승인 하에 호실로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제7조 (인원 및 생활 점검) ① 점검은 자체점검과 정기점검 그리고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점검은 당직사감(주1회 이상) 또는 사감(월1회 이상)이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필요에 따라 공대생활관장 또는 수명자가 실시한다.
③ 점검시간은 오후 12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관생은 안전관리, 화재 예방, 시설물 점검 및 청소상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⑤ 공대생활관장은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 상황, 화재 발생, 도난 사고 발생 등의 경

우에는 관생이 방에 없어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사전에 공지된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호실에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 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2회 이상 방문 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만약 호실점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벌점 부여 및 필요에 따라 퇴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24. 3. 4.>

제8조 (외박) ① 외박이라 함은 오후 12시까지 생활관에 복귀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단,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논문, 실험, 전공학습동아리 등의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는 다음 날 02:00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당직사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박을 하고자 하는 관생은 외박 당일 23:00 이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4.>

③ 외박을 하고자 하는 관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직사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④ 외박은 주말외박(금, 토, 일), 주중외박으로 구분하고 주중외박은 월 10회로 제한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대생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교양강좌 참여) 관생은 공대생활관에서 실시하는 초청강연, 교양교육 등의 강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제10조 (우편물) 우편물은 학내 우체국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

제11조 (광고, 게시 및 배포) ① 광고,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공대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 및 변상) ① 관생은 각자 실내의 화재예방과 공공비품관리 및 청소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3. 4.>

②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 등 학교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제13조 (생활관비) ① 공대생활관장은 입관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비, 식비 등 생활관비를 학기별로 징수하며, 개인 사정으로 입관이 지연되더라도 공지한 개관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기간 내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입관 포기로 간주한다. <개정 2024. 3. 4.>

1. 관리비는 일수 기준으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2. 식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징수한다.
   가. 정기개관: 개관 시작일 석식부터 종료일 조식까지
   나. 특별개관: 개관 시작일 석식부터 종료일 조식까지
   다. 중도 입관생: 입관 당일 석식부터 종료일 조식까지 <개정 2024. 3. 4.>

② 관생은 개관 기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3. 4.>

③<삭제> (2023. 5. 8.)

④<삭제> (2023. 5. 8.)

제13조의2 (생활관비 반환) ① 공대생활관장은 관생이 개관 전 입관을 포기할 때는 생활관비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 3. 4.>
② 관생이 중도 퇴관 시 사감실에 반드시 퇴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퇴관일 다음 날부터 7일분을 공제한 잔여 생활관비를 신청계좌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퇴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단, 중도 퇴관일이 공대생활관 정기퇴관일 15일 이내일 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4.>
③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학규정 제39조에 따른 공무결석일수가 5일 이상일 때 증빙서류 및 반환신청에 따라 식비를 반환한다. <개정 2024. 3. 4.>
④ 제3항을 제외한 식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관생 자치활동) ① 관생의 활동은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관 생활을 도모하며 학문의 연구와 교양함양을 위한 범위 내 에서 허용한다. <개정 2024. 3. 4.>
② 관생의 자치적인 생활관 내 활동을 위하여 관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4.>
③ 관생 자치회의 활동은 다음과 각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가. 면학분위기 조성
나. 생활의 질서유지 및 사내의 환경정화
다. 교양함양을 위한 활동 및 기타
제15조 (행사 및 집회) 생활관 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5일 전에 공대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후 10시 전에 마쳐야한다.
제16조 (선행점과 과실점) ① 국가·사회 및 학교의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특별한 선행을 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에게는 선행점을 주고 이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칙 또는 관생수칙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에게는 과실점을 준다.
제17조 (선행점) ① [별표1]의 기준으로 선행 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② 누적 선행점 70점 이상일 경우 다음 학기 입관 신청 시에 반영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우대한다. <개정 2024. 3. 4.>
제18조 (과실점) ① [별표2]의 기준으로 과실점을 부과하고, 각 항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공대생활관장이 과실의 경중에 따라 과실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누적 과실점의 합계가 70점 이상 인 경우 다음 학기 입관 신청 시에 반영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준다. <개정 2024. 3. 4.>
제19조 (선행 및 과실의 지적) 선행 및 과실을 지적할 수 있는 자는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직원 및 사감으로 한다. <개정 2024. 3. 4.>
제20조 (선행점 및 과실점의 관리) ① 선행 및 과실에 대한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사감은 선행 및 과실점을 부과하고 매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대생활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공대생활관장은 매주 선행점 및 과실점의 상세 내역을 공지 또는 통보하고 관생은 공지일로부터 공휴일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별표3]과 같이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으며, 공대생활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과실점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3. 4.>

③ 관생은 공대생활관장이 인정하는 선행(봉사) 활동을 한 후에 과실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실점 상쇄를 신청 할 수 있으나, 입관 후 누적과실점수 합계가 100점이 초과된 경우에는 퇴관 조치한다. 단, [별표2]에서 과실점 50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실 및 강제퇴관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다. <개정 2024. 3. 4.>

제21조 (퇴관) ① [별표 2]의 과실점 기준 1항에 해당하는 "치명적 안전문제 야기 및 범죄행위"를 일으킨 관생은 즉시 강제퇴관 조치하고 다음 학기에 입관신청을 할 수 없다. (학생징계위원회 상정) <개정 2024. 3. 4.>

② <삭제> (2022. 11. 1.)

③ <삭제> (2022. 11. 1.)

제22조 (퇴관절차) 관생은 호실 내를 깨끗이 청소한 후 공대생활관장에 퇴관신고를 한 후 비품 등의 확인을 받은 후 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4.>

제23조 (기타) 이 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수칙은 2004.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9. 08) (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1. 17) (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3. 00) (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5. 09) (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2. 01) (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01) (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00. 00) (시행일) 이 수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5.08., 일부개정)

이 지침은 총장 결재를 득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00.00., 일부개정)

이 지침은 총장 결재를 득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3. 4., 타규정개정)

이 지침은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학칙」(제906호)에 의거하여 2024. 3. 4.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행점 기준표

연번	내 용	선행점
1	관생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	20
2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자, 간병 등으로 봉사정신을 실천한 자	20
3	대학발전 및 생활관 발전에 기여한 자	10
4	생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	10
5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참여 및 입상한 자	5
6	기타 공대생활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5
7	생활관 화재대피 훈련 참석자 또는 교육 이수자	5
8	벌점 상쇄를 위한 봉사활동 (식당 청소, 행정보조업무)	5
9	분실물 습득을 신고한 자	5

[별표 2] 과실점 기준표

연번	내 용	과실점
1.치명적 안전문제 야기 및 범죄행위 **(강제퇴관)**	가. 타인의 물품 무단 사용, 우편물 무단 수취/개방하는 등의 절도행위 및 폭행(학생징계위원회 상정) 나. 성관련비위(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를 저지른 경우(학생징계위원회 상정) 다.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라. 화재를 일으키거나 생활관 내로 인화물질(휘발유, 부탄가스 등)을 반입하는 행위 마. 24:00 이후 외부인을 대동하고 입출입 시(비 관생, 다른 호관 관생 포함) 바. 이성이 생활하는 구역(계단 포함) 출입 또는 이성 대동 입실 사. 생활관 내 흡연, 음주 및 도박행위를 하는 자(주류반입)	100
2.안전문제 야기 및 단체생활 방해 **(중과실)**	가. 인원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출입문 잠금, 도어락 초기화 등) 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폭언 및 욕설 등) 다. 24시 이전 외부인(관생 이외의 사람) 대동 생활관 출입 및 출입방조 라. 무단외박 및 출입시간외 입·출입 마. 사전 허가 없이 학생들을 집합시키거나 훈련을 시킨 경우 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냉난방, 취사도구 등을 사용 [커피포트, 토스트기, 전기장판, 냉장고 등] 사.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50
3.관리방해	가. 교직원에 관한 불손한 언행(전화, 인터넷 포함)이나 교직원의 호실 점검 등 정당한 지시사항,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나. 생활관내 시설물 고의로 손괴, 훼손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다. 무단으로 입·퇴관 하거나 배정된 개인호실 임의변경(무단 호실 이동) 라. 반입금지 물품을 생활관 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마. 타인의 생활 및 면학에 방해되는 행위(타인 호실 출입자 포함) 바. 허위보고, 대리인검 또는 사적방송 등의 기만행위를 한 경우 사. 모임 또는 단체의 가입을 강요한 학생 아. 공지사항을 훼손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게시물을 부착한 경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관시간에 늦은 학생(지도교수가 인정하는 논문, 실험, 전공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차. 주중외박 10일 초과	30
4.소란, 소음, 및 민원	가. 민원(소란, 소음 및 풍기문란)을 야기한 경우 나. 개인호실 음식물 반입 및 취식 다. 인원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라. 퇴관 시 거주 호실 청소 불이행 마. 건강검진진단서 등 서류 미제출자(입관 후 10일 이내) 바. 1호관의 경우 승강기를 이용한 남학생(특별한 경우 행정실의 허락 하에 이용가능)	20
5.기타	가. 청소상태 불량 (호실 내 전원 부과) 나. 밤 12시 이후 세탁기 및 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10

[별표 3] 과실점 이의신청서

과실점 이의신청서

소속		학번		이름	

과 실 점 내 역		
일 자	내 용	과실점

이의신청 내용(상세하게 작성)

위와 같이 과실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인)

공대생활관장 귀하

[별표 4] 과실점 감면신청서

과실점 감면신청서

소속		학번		이름	

과 실 점 내 역		
일 자	내 용	과실점
총 과실점:		

신청 봉사 내 역		
일 자	내 용	과실점
총 신청 점수:		

최종 과실점	

위와 같이 과실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인)

공대생활관장 귀하